
2026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안내서

2025. 12.

1. 사업 목적

- 제조업 중심의 부산 지역 산업생태계를 신기술(블록체인 등) 기반 디지털산업 중심으로 개편·지원할 수 있는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(인프라·기업·인재·기술 집약)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

2. 사업 개요

- (사업명) 2026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
- (사업기간) 협약일 ~ 2026. 12. 31.
- (사업예산) 총 7,820백만원(국비 3,910백만원, 지방비 3,910백만원)
 - ※ 국비 1 : 지방비 1 매칭(부산광역시), '지방비 매칭 협약서'를 필수로 제출
 - ※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교부·집행 일정에 따라 국비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
 - ※ '26년도 사업계획 수립·확정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
- (예산편성)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 사용 계획 마련
 - 국비는 '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', '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', '성과 분석·공유'로 사용되어야 함
 - 종전 유사사업(국비예산이 확보된 예정 사업 포함)에서 진행했던 수행내용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국비로 편성·사용할 수 없음
- (대상지역) 부산광역시(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)
- (신청대상)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부산광역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

<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한 기관의 범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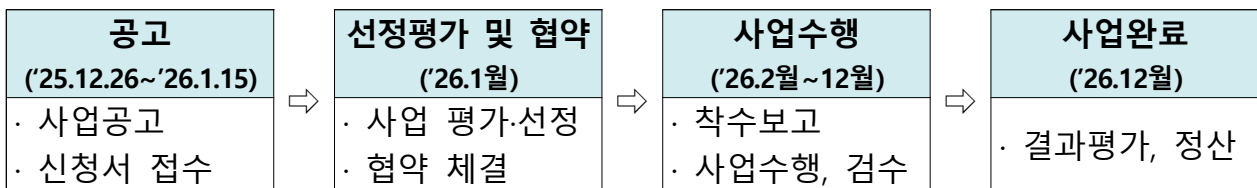
☞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가 지정·고시(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지정 고시」 기준)한 출자·출연기관

- (추진방법) 부산광역시가 출자·출연한 1개 기관이 사업 수행
 - 부산광역시는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, 사업비(지방비) 교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
 - 부산광역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은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추진,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, 성과 분석·공유 등 사업 수행

3. 주요 사업내용

- **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**
 - 항만 물류, 관광, 의료 등 부산지역 강점사업과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 시 시너지가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실증 프로젝트 추진(3건 이상)
- **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**
 - 부산 지역 내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,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유치·사업화 프로그램 운영(14개社 이상)
- **성과 분석·공유**
 - 실증 프로젝트 및 사업화 지원 기업들의 국내·외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회 개최(1건 이상)

4.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사업 추진체계



○ 추진체계에 따른 주요역할

구 분	주 요 업 무
과학기술정보통신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계획 총괄,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
부산광역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 ○ 지역특화 산업 융합 프로젝트 과제 선정 ○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며, 공동 사업수행기관으로 사업비(지방비) 교부
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(전담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○ 사업 공모 및 협약, 사업 수행관리, 성과 관리 ○ 사업비(정부지원금) 교부, 사업비 집행점검·정산·검토
평가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행기관 선정, 중간 및 결과 평가 등
전문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선협상결과 검토·심의(사업협약 전) ○ 사업 중도해지 및 정산환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검토·심의
(수행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과업 추진 ○ 사업 추진현황·결과 보고, 사업비 집행, 실적보고, 반납 ○ 기타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수행 등

II.

제안 안내

1. 접수 안내

- (접수기한) 2026년 1월 15일, 14:00 (*제출기한 이후 사유불문 접수불가)
- (접수방법) KISA 전자계약시스템(<https://cont.kisa.or.kr>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(신청주체) 부산광역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
- 제출서류

번호	제출서류명	필수여부	비고
1	신청서 제출 공문 1부	○	자체공문
2	사업수행계획서 1부	○	작성양식 참조[서식01]
3	사업제안 발표자료 1부	○	자체 양식
4	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	○	-
5	지방비 보조금 협약서 1부	○	작성양식 참조[서식03]
6	참여의사 협약서 1부	○	작성양식 참조[서식04]
7	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	○	작성양식 참조[서식05]
8	청렴이행각서 1부	○	작성양식 참조[서식06]
9	연구개발비 등 위탁사업 사용계획서 1부	○	작성양식 참조[서식07]
10	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	○	작성양식 참조[서식08]
11	사업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가점검표 1부	○	작성양식 참조[서식09]
12	수행기관별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※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	○	총괄책임자의 수행기관 재직여부 증빙자료
13	증빙자료 등 기타 붙임자료	○	-

※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, 서류의 내용은 공모 마감일까지 유효해야 함

※ 필수 제출서류가 일부라도 누락될 경우 적합성 서류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

※ 협약체결 시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 제10조에 의거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- (문의처)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 정준기 선임연구원
(061-820-3938, jkjeong@kisa.or.kr)

2. 제안 내용

-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목적과 주요 사업내용을 만족하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제안하되 제안 필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
 - ※ 제안내용 이외에도 신청대상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성 있는 아이디어나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제안내용에 포함할 것
- (사업별 세부 추진방안 제시) 사업 기간 동안 수행하게 될 사업 내용에 대한 계획 및 목표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 제시
 - 향후 3년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확산 방안도 포함
- (사업 최종목표 구체화) 사업 최종목표(기술적 성과, 실증결과 기반 사업성과 등)에 대한 성과지표, 목표치 및 달성기준,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·정량적으로 제시
 -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방안 및 전략을 제시
 -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필수 추진

< 성과 기준 예시 >

○ 일자리 성과

- 신규채용인원(신입/경력), 고용형태(정규/계약), 취약계층(고용촉진대상자, 저소득층, 경력 단절여성, 장애인,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등), ICT 직무인원 등 일자리 창출 수 등

○ 정량적 성과

- 인력양성 성과 : 교육과정 수, 참가자 수, 수료자 수, 취업자 수 등
- 인프라 성과 : 콘텐츠 제작시설, 테스트베드, 시제품 제작, 시험/인증/분석, 입주공간 지원 등
- 지적재산권 성과 : 국내특허 건수, 해외특허 건수, 실용신안권 건수, 상표권 건수 등
- 홍보 성과 : 언론홍보 건수, 세미나/박람회 건수, 자료발간 건수, 수상 건수 등
- 컨설팅지원 성과 : 컨설팅 건수, 멘토링 건수 등
- 기업지원 성과 : 지원 기업 매출액, 투자유치액, 사업화 성공 여부 등

- (전담 조직·인력 확보)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·인력(최소 5명 이상, 각 참여율 100%) 확보 계획 포함
 - 사업수행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 조직 구성 및 추진체계,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 제시
 - ※ 1명 이상의 사업 전담인력은 사업관리(주무부처, 전담기관 등)의 요구사항 및 이슈 사항 대응,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이 가능해야 함
 - 수행기관(위탁용역 포함)별 역할, 세부 추진계획(목표, 수행내용, 수행방법, 일정 등), 수행단계별 품질보증(조직, 체계) 방안 제시
 -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의 인사명령은 협약 체결('26.2월 예상) 전까지 완료
 - 사업 총괄책임자의 참여 인력의 참여율은 100% 의무
 - ※ 타 부서 참여 인력(지원 인력)의 참여율은 10% ~ 100% 내에서 가능
 - 협약체결 기한까지 전담 조직·인력 미구성 시 선정 취소 가능
 - ※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담조직·인력 편성이 어려울 경우, 전담기관과 협의 가능
- (사업 수행현황 보고) 사업 수행현황 공유 및 환류 계획
 - 사업 수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산출물 내역 및 완료 시기 제시
 - 수시 및 월간보고(KISA 참석), 정기적 사업추진 점검 일정계획
- 기타사항
 -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사업의 목적, 내용 등의 차별성(유사·중복)을 확인하고 명시적으로 제시
 - 신규인력 창출 효과 및 투입 예산의 효율성 등 산출내역 제시
 - ※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시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하여 단계별 실증구현, 활용 및 확산 방안 제시
 -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도적인 사업추진 및 협력방안 제시
 - 과제(연구 포함) 및 외부용역(하도급) 등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 계획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

3. 선정 제외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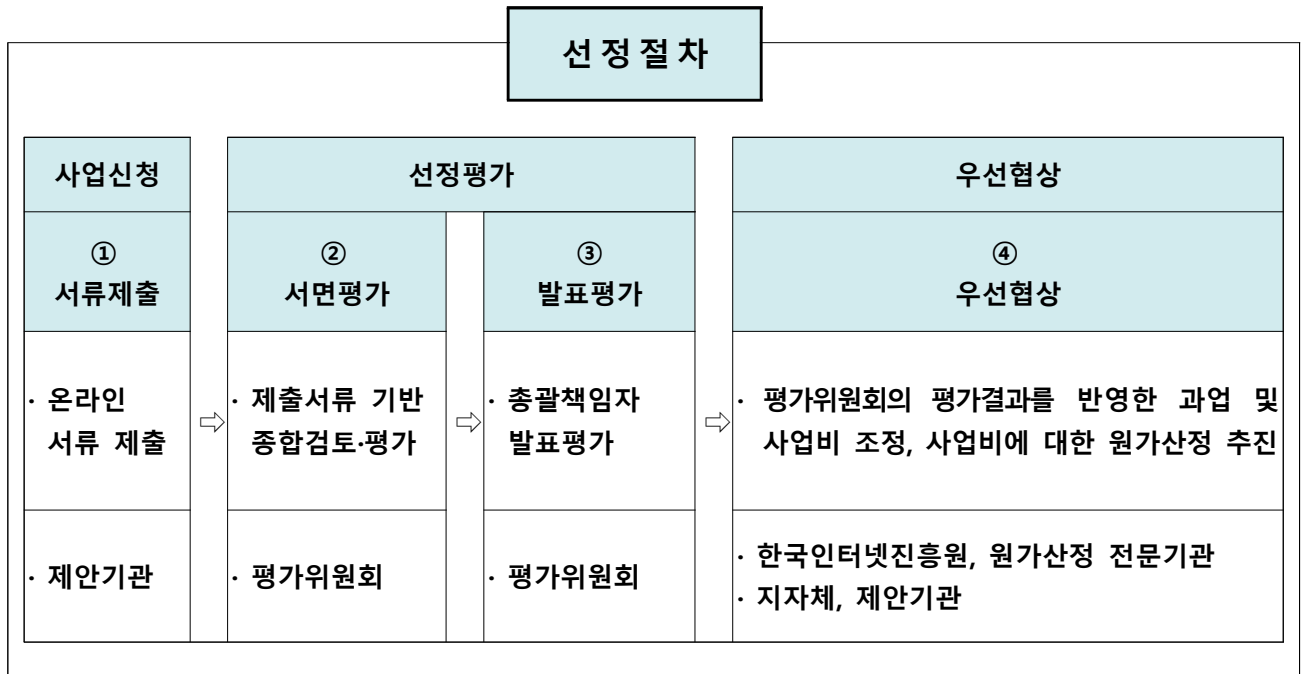
- 접수마감 당일까지,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(기업), 대표자, 사업책임자(총괄책임자)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
- 접수마감 당일까지,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(기업), 대표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
- 사업 신청완료 및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아래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, 사업 선정 취소 가능
 - 신청완료대상 및 최종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- 신청완료대상 및 최종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
 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-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 -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
Ⅲ.

선정계획

1. 선정절차

- (사업신청) 사업 신청 기관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
- (선정평가) 제출한 서류(사업계획서 등)를 선정기준(평가기준)에 따라 서면 평가 → 발표평가를 실시하여, 우선협상 대상 선정
- (우선협상) 우선협상 대상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우선협상내용을 전담기관과 협상 및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산정
 - ※ 우선협상 결렬 또는 최종심의결과 부적합일 경우, 우선협상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음



2 선정방법

- (서면평가) 제출된 서류(사업계획서 등)를 토대로 서면평가(2배수 선정)
 - (평가대상) 서류 제출이 완료된 제안기관

- (평가주체) 평가위원회
- (평가방법) 평가기준에 따른 서면평가 결과로 2배수 선정
 - ※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
 - ※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
 - ※ 단, 2개사 이하 제안시 단순 서류의 누락여부만 검토 예정
- (발표평가) 총괄책임자의 발표를 통하여 클러스터 도입의 필요성 및 수용성,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,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 평가 실시
 - (평가대상)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안기관
 - (평가주체) 평가위원회
 - (평가방법) 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 내용을 평가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결정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
 - ※ 발표평가는 발표(30분), 질의응답(20분)으로 진행될 예정
 - ※ 발표자는 제안기관의 총괄책임자(PM)이 발표 수행
 - ※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
 - ※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
- (우선협상)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제안 기관과 사업수행범위 및 예산집행내역 확정
 - (협상대상)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안기관
 - (협상방법)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과업범위 및 사업비 규모 등 조정·협의, 사업비에 대한 원가산정 추진

3. 선정기준(평가 항목)

평가항목		세부 평가지표	배점
적정성 및 기대효과 (30)	추진배경 및 사업 필요성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탈중양화,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기술을 지역에 도입한 이유 및 정책적, 시장성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이유 지역 여건, 산업 환경, 기업 현황, 블록체인 기술 수요,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배경 	10
	블록체인 적용 가능성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안한 지역 특화산업의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 융합의 적정성 지역 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 융합 시 블록체인 서비스 구현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	10
	블록체인 기술 적용 효과성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적 문제해결, 지역주민·국민 실생활 및 업계 프로세스 개선 등 사회적 파급효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생산유발, 부가가치유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타 산업과 블록체인 간 융합시너지 효과 등 신시장 창출 정도, 기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·파급, 유관기업 발굴, 지재권 출원·등록 등 산업적 파급효과 블록체인 특화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효과 	10
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(25)	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 계획 적정성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 계획의 적정성·효율성 기존 인프라 활용방안에 대한 적정성 	15
	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 계획의 명확성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중장기 발전 방안의 적절성 	10
지원체계 및 예산계획 적절성 (30)	추진조직의 전문성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행기관의 센터 기획·운영·관리를 위한 기관의 전문성 전담 조직·인력의 구성 및 안정적 운영방안의 적절성 수행기관 PM의 해당 분야 전문성 	10
	예산 적정성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추진 및 기금운용지침에 맞춘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향후 3년간 운영재원 확보 계획의 적정성 	10
	사업추진 의지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축사업 종료 후 자체 운영(자립화) 계획의 적정성 법·제도·규제 등 외부환경과 충돌 시 해결 방안 적정성 기타 지자체의 참여의지, 노력 및 추가지원 사항 적정성 	10
사업성과의 우수성 (15)	사업성과 목표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 예상 결과물의 우수성 각 내역사업간 연계에 따른 기대 성과의 우수성 	10
	성과 파급력 (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결과물의 현장적용 추진 전략의 구체성, 적절성 사업 추진 결과 이후의 성과 확산 가능성 및 적절성 사업 성과모델 전국 확산 방안의 적정성 및 우수성 	5
합계			100

※ 평가항목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가 동일하나, 서면평가와 발표평가의 결과는 독립적으로 시행됨

IV.

사업관리 및 기타 안내

1. 협약 안내

- 최종 선정 완료된 사업수행기관은 전담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
- 협약 체결시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정부지원금의 10% 금액 이상으로 하며,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까지일 것
-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교부·집행일정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되며, 수행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,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정부지원금액(100%)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,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
 - 단, 「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」 제35조(채권확보) 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 수행기관인 경우, 지급 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
-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 '전문위원회'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

2. 사업 추진

-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·월간 보고로 진행함
- 사업수행中 중간결과물(중간보고서 등), 최종결과물(최종보고서 등)을 평가하며, 필요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진행현황 점검함
 - ※ 「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」 제10조(수행기관 기금사업 점검실시) 준용
- 사업 추진기간 中 사업목표, 실행예산 등 추진 상의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,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
-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·통보사항은 회계법인 검토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요청하여야 함
 - ※ 수행 계획 변경의 승인·통보 기준은 '사업계획 변경(14p)' 참조
- 사업추진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 '전문위원회'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

3. 사업비 집행 관리

- 사업비란 국비(정부지원금)와 지방비(자체부담금(현물포함))를 합산한 전체 총액을 의미함
- 사업비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
 - ※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사업비로 총당할 수 없음
- 국비와 지방비를 통합 관리하는 별도 계좌(법인명의)를 개설해야 함
- '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' 제23조에 따라 각 사업별 회계담당자 지정이 필수며, 보증보험증권 가입 또는 선금지급각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
- 사업비 집행 시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(또는 신용카드)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하여야 함
- 모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구비되어야 함

- 사업비 편성은 「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의 준용하여 사업비를 편성할 것(간접비는 편성 불가)
 - 편성된 사업비로 수행기관 간 제품/시스템/서비스 등 거래 불가
 - ※ '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'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을 준용
 - 정부지원금·지방비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,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
- 부산광역시는 정부지원금 계상이 불가함
- 운영비(특근매식비, 유류비, 복리후생비, 기타운영비) 및 직무수행경비는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함
- 자산취득비는 경상적·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,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
 -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(PC, 노트북, 프린터, 복사기 등)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을 권장(임차료에 편성)
 - ※ 단, 신규채용인력의 PC/노트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가 가능하며, 구매수량은 신규채용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
 - 업무용과 실험·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며, 구입한 모든 자산은 취득 후 30일 이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 후 사용
- 수행기관이 타기업·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,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
-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
- 사업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(정부지원금 등)는 축소·조정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비·세목이 추가·변경·삭제될 경우에는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

- 정산 시 총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전액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반납
 - ※ 단,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
-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,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

4. 사업계획 변경

- 사업 계획 변경은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, 2024. 10. 24) 제11조(협약 등의 변경)를 준용함
- 사업 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, 사업 수행기관 내부 승인·통보 절차를 실시 이후, 전담기관에게 서면(공문)으로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(근무일 기준 7일 이내)
 - ※ 아래의 승인·통보 예시에서 해당되는 사업 계획 변경 사항을 확인할 것
- 승인·통보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을 변경하여야 함
 - ※ 사업수행계획서의 초기의도에 부합하도록 사업범위 이내로 사업 계획을 변경 하되, 자체부담금 등 총 사업비의 변경은 불가함

< 승인·통보 사항의 예시 >

구분	내용
승인사항	가.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변경 나. 최종 목표의 변경 다. 기금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라. 기금사업비의 운영비, 연구용역비의 20% 이상 증액 마. 다수의 사업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기관별 기금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. 기금사업비 관리계획의 변경 사. 비목 중 인건비, 여비의 세목간 변경 아. 취득가액 3천만원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)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
통보사항	가.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(연락처), 대표자, 명칭의 변경 나. 참여연구원 변경 다. 직접비의 10% 이내에서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라.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에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

5. 성과물 및 기타사항

-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, 시설물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 수행기관 소유
-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기타 일체의 법적권리는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함
 - ※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사업 홍보 시, 본 사업의 지원을 밝혀야함
- 사업 관련 언론보도·홍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협의 후 진행
- 사업의 수행 결과 및 수행 실적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,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함
-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이후, 개발 기술·제품의 사업화 현황, 매출액, 고용창출 등의 실적 자료를 요청할 시 제공하여야 함

6. 정산 절차

- 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,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·방법 등 협의
 - ※ 사업수행기관이 회계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,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(회계감사 비용으로 일반수용비 편성 필수)
-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제출
 - ※ 사업수행에 따른 관련 지침서류, 정산보고서, 지출 근거서류(영수증, 계좌 거래 내역 등), 기타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회계감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근거 자료 일체
-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·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와 최종정산보고서를 수행기관에게 송부
-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한 전자파일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
 - ※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(바인딩하여 1부 제출)

-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정산금액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정 계좌로 입금 후 최종 정산잔액 송금내역서 및 송금 영수증 제출
※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-mail로 별도전송
-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산결과를 검토 시(필요시 실사), 오류가 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정산 요청

7.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

- 총 사업비(국비+지방비) 집행잔액, 지원금 발생이자, 회계감사 결과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등
 - 단, 총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금액의 합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

8. 정산보고서 제출서류 (※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바인딩)

- 정산보고서 1부
- 사업비 거래내역 확인서 각 1부(개설은행 발급)
- 사업비 계좌 해지 후 통장사본(전체 페이지) 또는 거래내역서 사본
- 회계감사보고서
- 정산내역서
- 지출원인 근거서류, 영수증, 계약서 등 회계감사 시 제출된 서류일체 사본
 - 제출방법 : 전자공문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